

○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의(물환경보전법 제2조)

수돗물,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**저장 및 순환**하여 이용하는 분수,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**개방**되어 이용자의 **신체와 직접 접촉**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

\* 제외사항 : 해당 시설에 **물놀이 금지 안내판(시설 관리자명과 연락처 표기)과 울타리** 설치한 시설

※ '19.10.17일부터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공동주택**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대규모점포까지 확대시행**

⇒ 수돗물, 지하수 등 용수를 이용 후 즉시 버리는 등 저장 및 순환 이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용수를 사용할 경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

⇒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설치기준은 없으며,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정한 높이와 형태를 갖추면 됨

⇒ 물놀이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물놀이형수경시설의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하여야 하며,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켜야 함



조합놀이대



바닥분수



계류시설('12.7.9, 익산신문)



벽천('09.9.9, 한국조경신문)

시설 예시

## 표지판 예시

- 규격 : 가로 800mm × 세로 500mm
- 재질 : 햇빛, 강우, 바람, 부식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재질
- 설치위치 : 시설과 인접한 곳(단, 이용객 안전 고려), 주 출입방향 전면 등 눈에 잘 띄는 곳, 시설이 길거나 넓은 형태일 경우 다수 표지판 설치
- 관리방법 : 훼손되거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경우 즉시 정비 또는 교체

※ 표지판 규격, 문안,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

## ■ 내용문안



## 물놀이 금지안내판 예시

### ○ 해당시설이 해야할 일

- 시설 **운영 15일전**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(02-2133-3854)로 **운영신고** 실시(별첨1 양식 참고)
  - ⇒ 물놀이형수경시설이나 시설고장 등으로 미운영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,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
- 운영시 **수질기준을 준수**하여야 함(별첨2 참고)
  -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**먹는물 수질검사기관**에 수질 검사를 의뢰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**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**
    - ⇒ 자체측정하거나 측정이 가능치 않은 일반 검사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됨
    - ⇒ 주말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가동일 기준으로 15일에 1회이상 수질검사측정을 하여야 함
    - ⇒ 봄, 가을 등 사람들의 이용이 적은시기라고 수질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5일 1회 이상은 검사하여야 함
    - ⇒ 용수를 매일 교체하더라도 수질관리가 필요하며, 용수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운영기간중에는 수질검사 및 여과·소독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- 운영시 **관리기준을 준수**하여야 함(별첨2 참고)

-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,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, 이용자 주의사항(음용 금지,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) 등을 **게시**

⇒ 아래 안내판 예시 참고

안내판은 반드시 고정식일 필요는 없으나 안내판에 포함된 내용(시설 운영자 연락처,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, 이용자 준수사항 등)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·관리하여야 함

### 안내판 예시

- 규 격 : 가로 1000mm × 세로 700mm
- 재 질 : 햇빛, 강우, 바람, 부식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재질
- 내용문안



- 설치위치 : 시설과 인접한 곳(단, 이용자 안전 고려), 주 출입방향 전면 등 눈에 잘 띄는 곳, 시설이 길거나 넓은 형태일 경우 다수 안내판 설치
- 관리방법 : 훼손되거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경우 즉시 정비 또는 교체  
※ 표지판 규격, 문안,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

### 물놀이형 금지안내판 예시

· 수심을 30cm이하로 유지하여야 함

⇒ 경사도에 따라 수심이 30cm가 넘는 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 수심을 30cm이하로 유지토록 하거나 물놀이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야 함

· 해당연도 운영기간 중 관리카드를(별첨3 참고)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30일까지 관할기관에 제출하고, 2년간 보관

·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·용수교체 등의 조치될 완료한 후,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함.

이 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(별첨3)에 수질 검사결과, 초과원인,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

## ○ 위반시 벌칙사항

- 미신고 후 시설운영,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

⇒ 1차 위반 100만원, 2차 위반 200만원,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